

납품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

엘에스엠앤엠 주식회사 (이하 "갑"이라 칭한다) 와 _____ 은(는) (이하 "을"이라 칭한다.)
"을"이 "갑"에게 납품하는 물품 및 용역대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 1 조 (적용범위)

- "을"이 "갑"에 청구할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이 약정서는 "갑"과 "을"이 기체결한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약정서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의 계약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

제 2 조 (금융기관과의 약정 체결 및 등록)

- "을"은 "갑"으로부터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고자하는 경우에는 "갑"과 대금 지급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(이하 "병"이라 한다) 과 구매카드 가맹점 약정 또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며, 제반서류를 갖추어 대금 지급일 7일전까지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"을"은 1항에 의하여 "갑"에게 제출한 제반서류상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거나 "병"과의 약정사항이 변경이 생길 경우 즉시 "갑"에게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대금의 지급)

- 지급어음(외담대)에 의한 지급
 - "갑"은 "을"과의 거래계약 또는 "을"과의 거래관행에 대한 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"을"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"병"에게 지급 위탁 함으로써 대금을 지급한다.
 - 전 항에 의하여 지급위탁을 받은 "병" 이 지급위탁 결과를 "갑"과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전송하고, 이 전산자료를 "갑"이 출력한 경우 출력된 전산자료는 "을"이 직접 발행하여 "갑"에게 교부하는 입금표 또는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.
- 현금결제(Firm-Banking) 지급
"갑"이 "을"에게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"을" 수금용 결제 계좌에 "갑"이 입금(원장에 기재)시키거나, "갑"이 "을" 수금용 결제계좌에 현금(Firm-Banking)으로 입금(원장에 기재)시킴으로서 "을"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.

제 4 조 (착오 입금분에 대한 반환)

본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과정 중에 "을"의 수금용 은행 계좌에 착오 입금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"을"은 "갑"에게 즉시 통보하고 반환토록 한다.

제 5 조 (채권,채무의 상계)

"갑"은 "을"에게 지불할 채무중에서 "을"에 대한 채권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지불할 수 있다.

제 6 조 (대금지급의 보류)

"갑"은 "을"이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또는 "을"의 신고내용이 변경된 후 그 즉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보류한다.

제 7 조 (위험부담의 면책)

- "갑"은 제2조 1항에 의거 "병"으로부터 지급위탁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송하는 시점에 "을"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"을"과 "병"과의 모든 사고에 대해 "갑"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"갑"은 제1조에 의해 "을"의 대금수금용 은행계좌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접수하기 전에는 기존 통지사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"을"의 불이익에 대하여 "갑"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 8 조 (약정기간)

본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.
단,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.
이상의 조항을 갑,을은 준수하기로 하며,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쌍방이 합의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【대금 결제 정보】

업체정보	상 호	
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
	사업장주소	
	담당자명 / 연락처	/
계좌정보	결제은행	
	계좌번호	

년 월 일

갑 : 엘에스엠앤엠 (주)

대표이사 구 동 휘

을 :

(인)

(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)

※ 첨부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법인(개인)인감증명 1부(3개월이내), 통장사본 1부,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

MSHD-2112-02(10년)